

# 임직원 행동기준

이 임직원 행동기준(이하 “행동기준”)은 JB금융지주 및 자회사의 모든 임직원(계약직, 파견근무자 포함)이 『윤리강령』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행동기준

### 제1장 기본 자세

- 법규준수
  -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, 감독규정 및 내규를 충실히 준수하고, 임직원 간 이를 위반하는 업무처리를 요청하거나 지시하지 않는다.
- 이해상충행위 금지
  - 임직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업무 수행 시 직무에 충실하며, 임직원 개인과 회사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하여야 한다.
- 공정한 자유경쟁
  -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다른 금융회사와 정당하게 경쟁하며 공정 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.

### 제2장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

- 상호 존중 및 차별금지
  - 임직원은 상하 및 동료 간 상호존중과 필요한 기본적 예의를 지키며 성별·연령·학연·지연·혈연·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.
-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
  -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회사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내부제보 및 제보자 보호
  - 임직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 또는 감사담당 부서에 제보 및 공시 익명 시스템(JB 두드림)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제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한다.  
(JB두드림이란? JB금융그룹의 내부자신고제도의 명칭으로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을 제보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JB금융그룹을 만들기 위한 제도)

### 제3장 뇌물 및 부패방지

-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
  -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, 회사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위법하거나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.
- 부당한 청탁금지
  -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의 채용, 승진, 이동 등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청탁 등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뇌물 수수 금지
  - 임직원은 뇌물 및 관행적 불법 수수료 등을 수수하거나 약속하지 않는다.
- 부당한 정치활동 관여 금지
  - 임직원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·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이나 후원을 제공하지 않는다.
- 반부패 관련 법규 준수
  -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의 제공 및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으며, 반부패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### 제4장 공정한 업무수행

- 정보보호
  - 고객 정보보호
    - 임직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고객의 정보(금융거래정보, 개인신용정보 등)가 제공·이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고객정보를 누설하거나,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회사 정보보호
    - 회사의 물적·지적 재산과 정보는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한다.
  - 지적재산권 보호
    - 타인의 지적재산을 존중하고 무단사용, 복제, 배포 등 일체의 침해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 금지
  -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, 시세조종, 미공개정보 이용, 단기매매 차익 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는다.
- 금융실명거래 준수
  - 임직원은 금융거래 시에는 금융실명법령에 따른 실지명의로 하여야 하며, 부당하게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등 비밀보장의무를 준수한다.
- 자금세탁행위 관여금지
  - 임직원은 중대범죄 행위로 발생한 불법재산을 은닉·가장하려는 자금세탁행위에 직·간접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,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.

## 제5장 지역사회 공헌과 환경보호

- 지역사회 공헌
  -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정당한 이익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하고 학문과 예술, 문화,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
- 재해예방 및 환경보호
  - 임직원은 재해·위험의 예방관리 및 깨끗한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, 재해안전 및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## 적용범위

JB금융지주 및 자회사의 모든 임직원(계약직, 파견근로자 포함)에게 적용되며, 또한 협력회사(계약자/공급자/서비스 제공자 포함)에 대해서도 본 “행동기준”이 준수되도록 노력하며 이 “행동기준” 또는 이에 준하는 행동강령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한다.

## 행동기준의 보완적 판단 원칙

임직원의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, 다음의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하며, 임직원 스스로 판단에 확신이 어려운 사항은 준법 담당부서에 의견을 요청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.

- 임직원 자신의 행동이 법규 또는 내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?
- 임직원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을 다른 임직원이나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가?
- 다른 임직원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결정이나 행동을 할 것인가?

임직원이 본 『행동기준』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규에 따라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, 그 경중을 판단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.